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길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61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5일

발 의 자: 김길영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
김혜지, 박상혁, 서상열,
송경택, 옥재은, 이상욱,
이효원, 장태용, 정지웅,
허 훈, 황철규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·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,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·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제2항 및 제3호 신설)
- 나. 시장은 편익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자 또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의 2제6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「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립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5조의2제6항 중 “편익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”를 “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자 또는 관리대행업자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주민복지향상) ① (생략)	제5조(주민복지향상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② 시장은 <u>편익시설을 또는 「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립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
<u><신설></u>	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② (생략)	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5조2(편익시설의 사용료 등)	제5조2(편익시설의 사용료 등)
① - ⑤ (생략)	① - ⑤ (현행과 같음)
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<u>편익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u>	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<u>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자 또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u>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주민복지향상)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고 제5조의2제6항 중 “편익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”를 “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 자 또는 관리대행업자에게”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	☎ 02-2180-7953
	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